

KDS 34 20 15 : 2016

표토보존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조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조경설계기준	•조경설계기준 제정	제정 (1999)
조경설계기준	•조경설계기준 개정	개정 (2002)
조경설계기준	•조경설계기준 개정	개정 (2007)
조경설계기준	•조경설계기준 개정	개정 (2013)
KDS 34 2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한국조경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정의	1
1.4 설계고려사항	1
2. 조사 및 계획	1
2.1 조사	1
3. 재료	2
3.1 품질 및 성능시험	2
4. 설계	2
4.1 표토 조사 및 배분	2
4.2 표토의 제거 및 활용	2
4.3 나무와 뿌리 제거	2
4.4 표토의 운반 및 잔토처리	2
4.5 표토의 채집, 보관 및 복원	3

표토보존

1. 일반사항

1.1 목적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지형을 복구하여 기존 지형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시키고, 환경친화적인 표토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KDS 34 20 10(1.2)를 따른다.

1.3 용어정의

KDS 34 20 10(1.3)을 따른다.

1.4 설계고려사항

1.4.1 전제 조건

KDS 34 20 10(1.4.1)을 따른다.

1.4.2 요구조건

- (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 (2)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필요시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현황조사

KDS 34 20 10(2.1.1)을 따른다.

3. 재료

3.1 품질 및 성능시험

1.3.1 재료 품질기준

식물생육과 관련된 토양은 일반적으로 유기질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토양산도가 중성에 가까운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이 코드 KDS 34 30 10(3.2)에 따른다.

4. 설계

4.1 표토 조사 및 배분

- (1) 현황조사시 조사된 보전대상 표토에 대한 위치별 채집 물량 및 배분계획을 결정한다.
- (2)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으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토양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방법을 마련한다.
-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하고, 토사채취 및 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으로 한다.

4.2 표토의 제거 및 활용

- (1) 놀이터 · 운동장 · 포장 부위에는 30 cm 정도의 표토를 제거한다.
- (2) 표토는 녹지의 식재용토로 활용한다.
- (3) 표토활용을 위한 표토보존방법을 강구한다.

4.3 나무와 뿌리 제거

- (1) 흙쌓기 부위에는 반드시 죽은 나무나 그 뿌리를 제거하도록 하고 제거 잔재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2) 제거한 나무나 뿌리는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 실천과 장소성 보전을 모색한다.

4.4 표토의 운반 및 잔토처리

- (1) 단계별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급적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운반 시기, 적치 장소와 작업 방법을 고려하여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 순서를 정한다.
- (2) 잔토처리에 관한 사항
KDS 44 30 00을 따른다.

4.5 표토의 채집, 보관 및 복원

- (1) 표토채집 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채집방법, 채집두께, 장비를 결정한다.
- (2) 채집표토의 일시적인 적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치높이를 결정한다.
- (3) 보관에 적절한 장소 선정이 곤란한 경우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마련한 후 가적치 방안을 마련한다.
- (4)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퍼주며,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해 최소 깊이 20 cm 이상의 지반 경운을 고려한다.
- (5) 식재기반이나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한다.



표토보존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조경	김영옥	(주)한솔에스앤디	대표이사
	연구책임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총괄	유주은	강릉원주대학교	겸임교수
		박선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조경	이민우	공주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조경	변영철	한국수자원공사
		박유정	삼성물산
		신경준	(주)장원조경
		김영옥	(주)한솔에스앤디
		이재욱	(사)한국조경학회
		조윤희	중앙대학교
		이형숙	가천대학교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박미애	
		최병순	(주)대창조경건설
		조성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지훈	단국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계숙	(주)케이엔지니어링
	이원아	모자익
	윤은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금옥	(주)도화엔지니어링
	채선엽	동부엔지니어링
	박유정	삼성물산
	김태연	(주)대우건설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김수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신재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신현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설계기준
KDS 34 20 15 : 2016

표토보존

2016년 6월 30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한국조경학회
061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 02-565-2055 E-mail : kila96@chol.com
<http://www.kil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kcsc@kict.re.kr
<http://www.kcsc.re.kr>